

2015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2차)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4. 12. 26.(금) 17:00~18:30
- 장 소 : 동천홍
- 참 석 : 위원 9명 중 9명 참석
 - 외부전문가 및 동문 : 백창현(위원장), 양호경(부위원장), 박광우 위원
 - 학교대표 :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
 - 학생대표 : 주무열, 양기원, 최광중 위원

2. 회의 안건

- 협의추천 위원 및 신입 위원장 선출
-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3. 전차 회의결과 보고 : 예산과장

위원장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접수함

4. 회의 내용

- 회의 내용
 - 협의추천 위원인 백창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위원장으로 선출
 - 2015년도 제2차 등심위 주요 논의 사항 낭독
 - 2014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 보고(국제농업기술 대학원, 행정대학원, 의학대학원)
 -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 학생측: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규정 상태에 대해 확인만 한 것이지 지침 형태로 제정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었음.
 - 대학측: 총장의 결재를 받아 현 상태의 지침형태로 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지침이 아닌 규정으로 제정하면

개정 사유 발생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운영의 탄력성이 문제가 됨. 지침이더라도 효력은 동일함. 개정 시에도 총장 결재만 득하면 바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

- 학생측: 등심위가 1년 주기로 개최되기에 탄력적인 규정이 굳이 필요 없지 않은가? 오히려 내부 지침이면 공시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
- 대학측: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기에 문제될 소지는 없음.
- 학생측: 학생들의 규정 제정 의견 제출.
- 대학측: 2가지 안건(규정 문제, 등록금 책정 심의)을 접수하되, 규정 문제는 등심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함. 학생 측 의견을 학교 측에서도 검토하고 안을 만들어야 함. 우선 본 안건을 처리하고 규정 제정은 차후에 의견을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함.
- 학생측: 등심위 회의자료는 모든 위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함.
- 대학측: 2차 회의자료 설명.
- 학생측: 학기 중 신설되는 학과 등 등록금 책정 때문에 학기 중에 등심위 개최 요청을 하였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함.
- 대학측: 기존 등심위에서 책정된 등록금 수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안됨. 또한 교육부 등록금 인상률 공시도 연말에 발표되기에 수시 개최가 어려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 대학측: 2015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2.4%로 제안함. 인상·동결시의 국가장학금 연계에 대하여 설명함.
- 학생측: 장학금 계획에 대하여 알고 싶음.
- 대학측: 법외회계 GSI장학금 75억, 교내장학금 233억, SNU희망 장학금 38억원을 지원하였음. 규정상 등록금 세입액의 1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총 1,850억원 등록금 수입액 중 약 346억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으면 약 18.7%임.

법적으로 10% 이상 지급 비율은 서울대학교가 정확히 이행하고 있음. 발전기금 운영비가 연 40억원인데 내년에 31억원으로 줄었음에도 39억원이 재정 적자임. 구조적으로 발전기금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음. 다만, 학교 측에서 장학금을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배려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음.

- 학생측: 총장 공약 사업 가운데 학부생 장학금 지급 비율을 2016년까지 70% 인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알고 싶음.
- 대학측: 일반 법인회계로 장학사업을 신설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장학금 지급 비율의 법정 기준은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선한 인재 양성 등의 차원에서 동창회 지원 등을 통해 장학금 지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유동성이 있기에 이점을 고려하되 장학금 지급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림.
- 학생측: 서울대 학생의 소득분위가 높은 것은 사실임. 동시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많음. 하지만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다른 형태의 장학금 지급 방법도 고려해야 함. 현재 장학금 형태가 전액 장학금 형태이기에 근로장학생 등 주거비, 생활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장학금이 늘어나야 함. 즉, 단순히 장학금 지급 총액이 늘어나는 것보다 어떤 구조로 장학금 형태가 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대학측: 학생 위원들 의견에 동의함. 질적으로 자원 배분을 재편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음.
- 학생측: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좋다고 생각됨.
- 대학측: 자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별 세입 세출 내역은 현재 편성 중이기에 제공이 어렵고 전체적인 규모의 현황은 제공 가능함.
- 학생측: 교육 원가 연구에서 대학원도 같이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을

회의록에 넣으면 좋다고 생각함. 차등 책정 사유 및 근거도 남기면 좋음.

- 대학측: 연구 결과가 나오면 담당 연구책임자가 보고서 형태로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임.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견 수렴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학생측: 대학원생의 최저 생활 보장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등심위에서 논의하면 좋다고 생각함.
- 대학측: 생활비 등의 문제는 공감하지만 학생 복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처에 건의하는게 타당함. 아울러 3차 회의에서 등록금 책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마무리 짓도록 결정하고 향후 등심위 지침 제정에 대한 학교측 의견도 만들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음.
- 학생측: 등심위 일정과 지침 제정에 대한 논의에 노력하기로 함.

<차기 회의를 2015년 1월 6일(화) 12:00에 개최하기로 합의>

2014. 12. 26.